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



金鐘敏

<중앙환경분쟁 조정위원회>

I. 법령정비의 배경

이제까지 정부의 가장 주된 정책과제의 하나는 경제성장을 통한 국민복지의 향상이었고,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진국의 산업기술과 자본을 도입하여 수출위주의 경제성장정책에 총력을 기울였다. 결과적으로 선진국에서는 수세기에 걸쳐 달성한 성과를 짧은 기간동안에 이룩했으나 그 부작용도 적지 않은데 심각한 문제의 하나로는 환경문제를 들 수 있다.

환경분야와 관련한 사회적 비용투자의 인식부족은 경제개발에 기울여 온 노력에 비해 오염문제를 소홀히 취급하도록 했고, 미약한 환경투자는 환경오염 및 그 피해라는 사회적인 병리현상을 가져왔으며, 이로 인하여 환경문제가 우리사회의 갈등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의 비약적인 성장신화에 대한 미련이 아직까지도 남아 사업장의 경우에는 생산 그 자체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사회적 비용으로서의 오염물질 처리비용에 대한 투자는 불필요한 낭비라는 인식을 완전히 불식하지 못했고, 공공투자부문의 경우에도 환경에 대한 고양된 사회분위기 때문에 투자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수긍하나 오염방지를 위한 재원영출에 관하

여는 관계자간의 의견대립으로 합리적인 대안의 마련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국가의 개발정책은 경제적인 면에 기울여져서 산업 및 제반 기반 시설의 대도시 주변에의 배치가 여전하고, 공단의 이전 및 대규모 공업단지 조성을 위한 산업입지개발에 있어서도 우리국토의 환경여건에 대한 고려가 아직은 미약한 듯하다.

이와 같은 국토의 이용·개발계획은 환경측면에서 좁은 지역에 오염원을 집중시키게 되어 심화된 지역오염이 규모의 불경제현상 초래라는 경제적인 역기능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국민들의 소비생활부문에서는 관광, 향락 및 레저활동 등 여가생활과 관련된 자연환경의 무분별한 훼손 및 파괴와 특히 대도시 가정의 일상생활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생활쓰레기, 취사·난방, 생활하수, 자동차 및 일회용품의 사용 등으로 인한 심각한 오염문제에 대하여 산업사회의 생활양식에 적합한 의식구조의 전환 및 제도 정착에 대한 관심이나 공공시설의 설치와 같은 국가적인 대책마련이 미흡하다.

이처럼 국가나 개인 그리고 생산과 소비활동의 모든 면에서 우리실정에 적합한 오염방지대책에 대한 국민적인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주변생활환경에의 오염유발 및 자연환경의 개발 및 파괴를

계속함에 따라 인간의 생존에 필수적인 물과 공기와 같은 환경의 기초소재까지도 마음놓고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더우기 공단지역이나 그 주변의 인구 밀집지역의 경우에는 적극적인 대책을 더 이상 늦추게 되면 오염현상이 갈수록 심화되어 그 영향이 지역사회에 미칠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우리사회전체가 져야 할 부담과 관련하여 심히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정부에서는 1990년을 "환경원년"으로 선포한 후 환경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환경보전시책 중 법령정비작업의 일환으로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수질환경보전법 및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제정하여 1991. 2. 2부터 시행했고, 해양오염방지법, 폐기물관리법,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법률을 제·개정하여 1991. 9. 9부터 시행했다.

II.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

[1] 제정취지

생활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는 고형폐기물과 달리 수질오염에 직접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대소 오염원이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전국에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현행 폐기물 및 폐수배출시설 관리체계로는 효과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려운 바, 이러한 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별도의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및 수질환경보전법에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련되는 조항을 분리·보완한 후 새로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을 1991. 3. 8 법률 제4364호로 제정·공포하여 1991. 9. 9부터 시행했다.

[2] 주요내용

가. 농·어촌지역의 오수·분뇨 및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축산 폐수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시장·군수로 하여금 필요한 지역

경제의 비약적인 성장신화에 대한 마련이 아직까지도 남아 사업장의 경우에는 생산 그 자체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사회적 비용으로서의 오염물질 처리비용에 대한 투자는 불필요한 낭비라는 인식을 완전히 불식하지 못했고, 공공투자부문의 경우에도 오염방지를 위한 재원영출에 관하여는 관계자간의 의견대립으로 합리적인 대안의 마련이 어려운 실정이다.

에 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설치·관리하도록 했다.

나. 오수정화시설의 설치대상지역을 읍이상에서 전국으로 확대하여 농·어촌지역의 경우에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설치자에게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상수원의 수질보호를 위하여 환경처장관이 고시하는 상수보호구역이나 그 인접지역의 경우에는 주방·목욕탕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오수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를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다. 분뇨수집대상지역을 읍이상에서 전국으로 확대하여 농·어촌지역에서 발생하는 분뇨도 시장·군수가 수거하도록 하고, 수거가 곤란하거나 비료 등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산간·벽지 등 시장·군수가 고시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대상지역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라. 대규모의 축산시설에 대하여는 수질환경보전법에서, 중간규모의 축산시설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에서 별도의 관리기준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축산폐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곤란하였던 바 이를 일원화함으로써 효과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했고, 시장·군수로 하여금 소규모의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축산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공공

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3]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해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이 법의 내용은 ① 총칙분야 ② 오수의 처리 ③ 분뇨의 처리 ④ 축산폐수의 처리 ⑤ 분뇨관련 영업의 허가 등 ⑥ 보적 및 별칙으로 구분된다.

1. 총칙

가. 법의 목적

이 법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 수질오염을 감소시킴으로서 국민보건의 향상과 생활환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법 제1조)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1) 분뇨 및 축산폐기물의 광역관리

가) 시장·군수 및 구청장의 책무

시장·군수 및 구청장은 관할구역내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이를 유지 및 관리하고, 처리방법을 개선하는 등 분뇨 및 축산폐수로 인한 수질오염의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법 제3조제1항)

나) 시·도지사의 책무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책무가 이행될 수 있도록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관할구역안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법 제3조제2항)

다) 국가의 책무

국가는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대한 기술을 연구·개발·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이행되도록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및 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법 제3조제3항)

2) 분뇨 및 축산폐수의 광역관리

가) 처리시설의 설치·운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둘이상의 시·군·구에서 발생하는 분뇨 또는 축산폐수를 광역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분뇨처리시설 및 축산 폐수공동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한다.(법 제4조제1

항)

나) 광역관리 및 지원의 권고

환경처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간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사업의 조정을 함에 있어서 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의 공동사용을 권고하고, 당해시설이 설치된 지역의 생활환경보전과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 지도록 권고한다.(법 제4조제2항)

다) 방류수 수질기준

오수정화시설·정화조·분뇨처리시설·축산폐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하되, 특별대책지역에 대하여는 수질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엄격한 기준을 정하여 이를 시행한다.(법 제5조, 시행규칙 별표1)

다. 타인의 토지안의 출입 및 사용·수용

시장·군수·구청장 및 이의 위임을 받은 자는 분뇨처리시설 또는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에 관한 조사·측량 및 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손실을 보상하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 및 구청장은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건물 및 그에 부수된 권리를 사용·수용할 수 있다.(법 제6조 내지 제8조)

2. 오수의 처리

가. 오수정화시설의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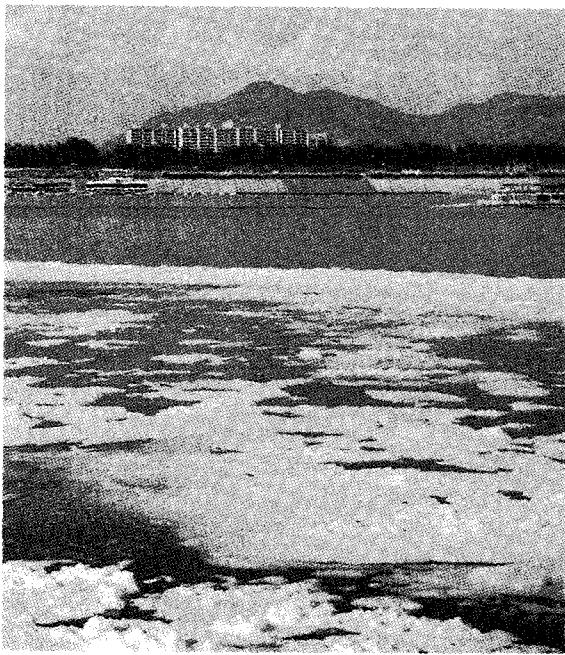
1) 설치신고 등

일정 규모이상의 건물 기타 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되,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총리령으로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법 제9조, 시행령 제2조, 시행규칙 별표2)

2) 설치대상 건물 등

가) 합산한 건축연면적이 1천 600제곱미터이상인 건물 기타 시설물. 다만, 상수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특정호소수질관리구역,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안에서는 건축연면적이 8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기타 시설물

나) 건축연면적이 400제곱미터이상인 고속도로상의 휴게소



다) 18홀 이상의 골프장업, 식품점객업 또는 조리판매업, 관광숙박업 및 숙박업에 필요한 단위업 소별 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기타 시설물

3) 설치면제

오수를 종말처리장 또는 폐수종말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하거나 환경처장관이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없는 지역으로 지정·고시한 경우 또는 1일 거주·체류인원이 50인 이하인 독립된 차고, 창고, 변전소 기타 환경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물 기타 시설물의 경우에는 오수정화시설의 설치를 면제한다. (법 제9조)

나. 정화조의 설치

1) 설치신고 등

수세식변소를 설치하는 자는 정화조를 설치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법 제10조, 시행규칙 별표2)

2) 설치면제

수세식변소의 오수를 오수정화시설에 유입시켜 처리하거나 종말처리장 또는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우·오수분류식하수도를 통하여 유입·처리하는 경우 또는 환경처장관이 정화조를 설치할 필요가 없는 지역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의 경우에는 정

화조의 설치를 면제한다.

다. 설치에 따른 준공검사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의 설치 또는 변경설치의 공사를 완료한 때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법 제11조)

라. 오·폐수의 병합처리

수질오염방지시설에 동일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수·분뇨 또는 축산폐수를 병합하여 처리한 경우에는 오수정화시설·정화조 또는 축산폐수정화시설을 각각 설치한 것으로 본다. (법 제12조)

마. 오수정화시설의 설계·시공

오수정화시설은 설계·시공업자가 설치하도록 하되, 건축주가 자기 건축물의 오수정화시설을 직접 설치하는 경우이거나 오수처리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또는 국내에서 처리기술상 일반화 되어 있지 아니한 오수정화방법을 이용한 경우로서 국·공립시험기관 또는 대학부설환경관계 연구소 기타 환경처장관이 인정하는 연구·시험기관의 실증시험을 거친 시험용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오수정화시설설계·시공업자가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이 경우 시공감리자를 지정하여 그 시공을 감리하도록 할 수 있다. (법 제13조, 시행령 제3조, 시행규칙 제17조)

바. 오수정화시설의 관리 등

1) 유지·관리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시설이 설치 된 건물에서 배출되는 오수를 무단방류하거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처리하여서는 아니되며, 방류수 수질기준, 설치기준과 내부청소 등 총리령이 정하는 관리기준에 따라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시행규칙 제19조)

2) 개선명령

시장·군수·구청장은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의 운영·유지·관리가 해당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개선에 필요한 조치, 기계·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3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 당해시설의 개선·대체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처리

1일 평균 100킬로그램이상인 분뇨 또는 축산폐수를 재활용 목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및 장비명세를 첨부하여 재활용 개시 7일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총리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이
분뇨수집제외지역으로 정한 지역에서 생활환경에 피해가 생기지 않는 방법으로 분뇨 또는 축산폐수를 처리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상 인원이 500인 이상인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인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명령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개선계획서를 별도로 제출 받아야 하며, 개선명령을 한 시설에 대하여는 그 명령의 이행상태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 한 사유로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3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법 제14조제3항,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

3) 대집행

시장·군수·구청장은 정화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내부청소를 하지 아니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법 제14조제4항)

사. 간이오수정화조의 설치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대책지역, 상수보호구역, 특정호소수질 관리구역 기타 환경처장관이 상수원의 수질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한 지역에서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식품접객업 또는 조리판매업을 하는 자에게 주방·목욕탕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제

거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간이오수정화조의 설치를 명할 수 있고, 당해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법 제15조, 시행령 제4조, 시행규칙 제23조)

아. 공중변소의 설치 및 관리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수인이 통행하거나 모이는 장소에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변소를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고 이를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법 제16조, 시행규칙 제24조)

자. 수질오염물질 등의 사용제한 권고

환경처장관은 오수의 수질을 현저히 악화시킨다고 판단되는 특정공산품에 대하여는 다음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그 판매 또는 사용의 제한을 권고할 수 있고, 판매자 또는 사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법 제17조, 시행규칙 제25조)

- 1) 종밀처리장의 설치현황 및 계획
- 2) 하수관거의 정비현황 및 계획
- 3) 공공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
- 4) 기타 지역적 특성

3. 분뇨처리

가.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

1) 시·도의 기본계획

시·도지사는 환경처장관이 정한 지침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환경처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환경처장관은 시·도의 기본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법 제18조제1항)

2) 시·군·구의 기본계획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안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법 제8조제2항)

3)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하는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법 제8조제3항, 시

행규칙 제26조)

- 가) 관할구역의 인구·주거형태·지리적 환경·축산현황 등 개황
- 나) 분뇨 및 축산폐수의 발생 및 처리현황
- 다) 계획연도·계획구역·계획인구 및 계획가축두수
- 라) 장래의 발생량에 관한 사항
- 마) 보관·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사항
- 바) 재활용 등 자원화에 관한 사항
- 사) 처리에 소요되는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 아) 기타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나. 분뇨의 처리

1) 시장·군수·구청장의 분뇨처리책임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내의 오지·벽지 등 가구수가 50호 미만인 지역 또는 차량의 출입 등이 어려워 분뇨의 수집·운반이 거의 불가능한 지역중 분뇨의 수집·운반·처리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지정·고시한 지역을 제외하거나 분뇨관련영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한다. (법 제19조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6항, 시행규칙 제27조 및 제28조)

2) 각종 교통시설 등을 관리하는자의 분뇨처리책임

변소가 설치되어 있는 차량·선박 또는 항공기를 운행하는자 및 이동식 변소를 설치·관리하는자는 당해시설에서 배출되는 분뇨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스스로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며, 수집·운반·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분뇨관련영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법 제19조제3항 및 제4항, 시행규칙 제28조)

다. 분뇨의 재활용

1일 평균 100킬로그램이상인 분뇨 또는 축산폐수를 재활용 목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자는 시설 및 장비명세를 첨부하여 재활용 개시 7일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총리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이 분뇨수집제외지역으로 정한 지역에서 생활환경에 피해가 생기지 않는 방법으로 분뇨 또는 축산폐수를 처리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20조, 시행규칙 제29조 및 제30조)

라. 분뇨처리시설

1) 시설의 설치

분뇨처리업자 이외의자가 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및 분뇨처리시설의 설치에 따른 타당성조사서를 환경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총리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법 제21조, 시행규칙 제31조 및 제32조)

가) 시설의 개요

나) 연간관리비 소요예상액

다) 처리용량 및 처리방법

라) 방류수의 수질과 방류방법

마) 최종오니의 발생량과 처리방법

2) 시설변경의 승인

승인을 얻은 사항 중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환경처장관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법 제21조, 시행규칙 제32조)

가) 처리용량

나) 처리방법

다) 처리시설의 위치

라) 방류수의 방류방법

마) 최종오니의 처리방법

3) 시설의 설계·시공

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자는 분뇨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에게 설계·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법 제22조)

4) 시설의 관리

분뇨처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방류수 수질기준·설치기준과 총리령이 정하는 관리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환경처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당해 시설이 각종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관리될 때에는 그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개선을 명한다. (법 제23조, 시행규칙 제33조)

4. 축산폐수의 처리

가. 축산폐수 배출시설

1) 설치허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축산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축산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처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법 제24조제1항, 시행령 별표1)

- 가)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 나) 가축사육두수와 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 다) 축산폐수정화시설의 설치내역서와 그 도면
- 라)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용수의 사용량을 예측한 내역서

2) 설치허가의 제한

환경처장관은 축산폐수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인하여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주민의 건강·재산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서의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제한 할 수 있다.(법 제24조제3항)

3) 설치신고

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하는 축산폐수 배출시설외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축산폐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법 제24조제4항, 시행령 별표2)

나. 축산폐수정화시설의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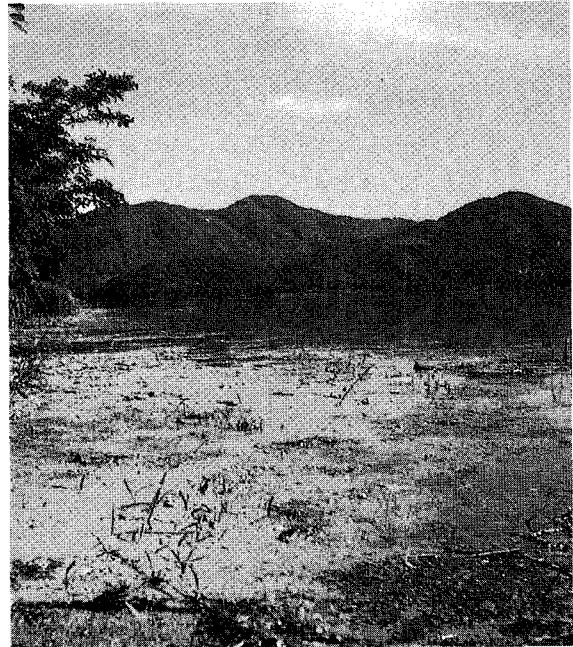
1) 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대상 축산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한 자는 당해 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하여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적합한 축산 폐수정화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법 제25조제1항, 시행규칙 별표5)

2) 설치면제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방법으로 축산폐수의 적정처리가 가능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축산폐수정화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된다.(법 제25조제1항 단서, 시행령 제8조)

가) 분뇨처리시설 또는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에 축산폐수를 유입하여 처리하거나 그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나) 환경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축산폐수 배출시설에서 발행하는 축산폐수를 자가처리하는 경우

3) 축산폐수정화시설의 준공검사

축산업자는 축산폐수정화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준공검사를 신청하고, 7일이내에 설치된 시설에 대하여 조사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확인 받아야 한다.(법 제26조, 시행규칙 제42조)

4) 축산폐수정화시설의 설계·시공

축산폐수정화시설은 축산폐수정화시설 설계·시공업자 또는 방지시설업자로 하여금 설계·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대상 축산폐수 배출시설에 설치하는 축산폐수정화시설을 환경처장관이 정하는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스스로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 제27조)

다. 축산폐수배출시설 및 축산폐수정화시설의 운영 등

1) 운영 및 유지·관리

축산업자는 축산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방류수 수질기준에 적합하게 처리되도록 당해 시설을 정상운영하여야 하고,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에 적합하도록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부득이 한 사유로 정상운영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고함과 동시에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기간내에 당해 시설을 개선하여야 한다.(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 시행령 제9조, 시행규칙 제43조)

2) 개선명령

환경처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축산폐수배출시설 및 정화시설이 운영 또는 유지·관리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선에 필요한 조치, 기계·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3개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 당해 시설에 대한 개선을 명하고, 개선계획서를 제출받아 그 이행여부를 확인한다.(법 제28조제3항, 시행령 제10조 및 제11조, 시행규칙 제46조 내지 제48조)

3) 배출부과금

환경처장관의 허가를 받아 시설을 설치한 자가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유기물질과 부유물질을 배출하는 때에는 기본부과금 50만원에 처리부과금을 합산한 배출부과금을 납부할 것을 명한다. 이 경우 자진신고를 한 때에는 기본부과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법 제29조, 시행령 제12조 내지 제20조)

라.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

1) 시설의 설치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은 총리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되, 시장·군수·구청장이 소규모 축산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축산폐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처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 시행규칙 제50조)

2) 시설의 관리 등

시장·군수·구청장은 축산폐수공동처리 시설을 방류수 수질기준,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환경처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당해 시설이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 관리되는 때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당해 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한다.(법 제31조 제1항 및 제2항)

3) 비용부담

시장·군수·구청장은 축산업자가 받은 이익의 범위안에서 배출하는 폐수의 양·성상·오염물질의 농도 기타 배출방법 및 형태 등을 고려하여 축산폐수공동시설에서 처리되는 축산폐수를 배출하는 자로 부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한다.(법 제32조, 시행규칙 제53조)

마. 간이축산정화조의 설치 권고 등

시장·군수·구청장은 축산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한 시설에서 발생되는 축산폐수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총리령이 정하는 간이축산폐수정화시설의 설치를 권고하고,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법 제33조, 시행규칙 별표6)

바. 가축사육의 제한 등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을 위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지역을 지정하여 그 지역안에서 가축의 사육을 제한하고, 축사의 이전 기타 위해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축사의 이전을 명하고자 할 때에는 6월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며,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 부지 알선 등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법 제34조)

5. 분뇨관련영업

가. 분뇨관련영업의 허가

분뇨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나 정화조의 청소를 업으로 하고자 할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 등 요건을 갖추어 업종별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법 제35조제1항, 시행규칙 별표7)

나. 분뇨관련영업의 구분 및 영업내용(법 제35조제2항)

1) 분뇨수집·운반업

분뇨를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반하는 영업

2) 분뇨처리업

분뇨처리시설을 갖추고 분뇨를 최종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하는 영업



3) 정화조청소업

총리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화조를 청소하고, 정화조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할 오니를 처리장소로 운반하는 영업

다. 영업구역 및 허가제한

시장·군수·구청장은 허가를 함에 있어서 영업구역·기한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고, 분뇨발생량과 분뇨관련영업자의 지역적 분포 등을 고려하여 영업허가를 제한한다.(법 제35조제4항 및 제5항)

라. 허가의 취소 및 과징금부과 등

시장·군수·구청장은 분뇨관련영업자의 위법 행위가 있을 경우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하며, 그 영업정지가 당해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2천만원이하의 과징금 납부를 명한다.(법 제37조)

마. 분뇨처리시설 등의 설계·시공업

분뇨처리시설 또는 오수정화시설의 설계·시공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 등 요건을 갖추어 환경처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정화조 또는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설계·시공을 업으로 하

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법 제38조, 시행규칙 별표8)

바. 정화조제조업

1) 정화조제조업의 등록

정화조의 제조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 등 요건을 갖추어 환경처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제조를 위하여 정화조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등록이 면제된다.(법 제39조 시행규칙 별표9)

2) 정화조의 제조·판매

정화조 제조업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구조·규격 등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게 정화조를 제조·판매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정화조 제조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하는 정화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 시행규칙 별표 10)

6. 보칙

가. 기술관리인의 임명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의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당해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기술관리인을 임명하고,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법 제42조, 시행령 제23조)

1) 1일 처리용량이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오수정화시설(동일장소에 2기이상 설치된 경우를 포함)

2) 처리용량이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정화조

3)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인 분뇨처리시설

4)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축산업자가 설치한 축산폐수정화시설(톱밥발효돈사시설은 제외)

5) 1일 처리용량이 100세제곱미터 이상인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

나. 기술관리인의 선임면제

기술관리능력이 있는 자와 다음사항이 포함된 관리대행계약을 체결했거나 배출시설관리인이 선임된 사업장의 경우에는 기술관리인의 선임이 면제된다.(법 제42조 단서, 시행규칙 제68조)

- 1) 처리시설별 점검항목 및 점검기록의 유지
- 2) 기술관리의 횟수 또는 방법

다. 기술관리인 등의 교육

기술관리인 및 다음의 분뇨처리담당자 등을 고용한 자는 3년마다 1회 이상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법 제43조, 시행령 제25조, 시행규칙 제69조)

- 1) 분뇨관련 영업의 허가를 받은자와 그의 분뇨 등 처리에 관한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기술요원
- 2) 분뇨처리시설 등의 설계·시공업 등의 등록을 한자가 고용한 기술요원
- 3) 정화조 제조업의 등록을 한자가 고용한 기술요원

7. 청문제도

환경처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청문대상의 처

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청문대상처분에는 축사의 이전 기타 위해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명령 또는 분뇨관련 영업자에 대한 허가취소, 영업정지명령 또는 과징금 납부명령, 분뇨처리시설 등의 설계·시공업자 또는 정화조제조업자에 대한 등록취소·영업정지가 있다.(법 제51조)

8. 행정벌

이 법에서 정한 각종 행정명령의 불이행 및 사업자의 의무 위반에 대하여 행정형벌이나 행정질서별을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양벌규정을 두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대표자에 대하여도 해당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53조 내지 제58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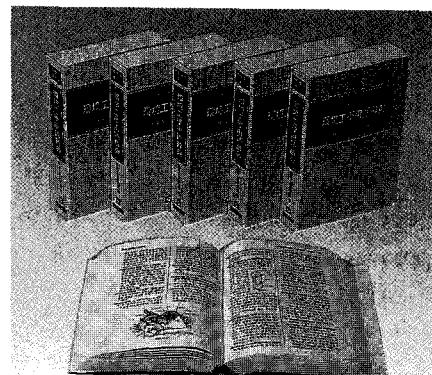
기초 응용 기술 용어 총망라 環境工學用語辭典

環境工學研究會 編 / 716P / 정가 15,000원

• • • • • 본서의 내용 • • • • •

실제로 활용되고 있는 환경 공학의 기초에서 응용 기술에 이르는 용어를 가급적 폭넓게 취급한 것으로 필요에 따라서 도해를 삽입하여 구체적으로 알기 쉽게 해설하도록 힘썼다.

- 환경 관계자는 물론, 일반인, 기술자, 학생의 필독서
- 현대 사회에 널리 쓰이는 현장 용어를 중심으로 실무에 필요한 학술 용어, 실무 용어와 관용어 등을 망라하여 수록
- 한글, 일어의 색인을 두어 한글 문헌이나 일어의 문헌 및 카탈로그 등을 읽는데 도움이 되게 하였다.



150-05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 6동 4579번지
TEL : 844-0511~3, FAX : 844-8177